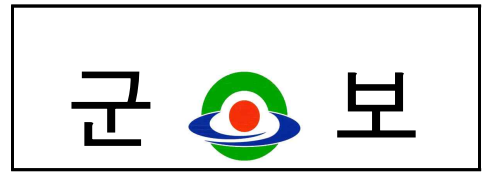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73호 2023. 9. 21.(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예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23-1224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담당관(전화 650-6065)

예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예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1일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2. 3. 25.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군수·군민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 1조 ~ 제6조)

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 군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가 감축 목표를 고려하여 설정
-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예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다. 예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6조)

- 구성인원 : 15명 이내(당연직 및 위촉직)
- 기능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및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
- 위원임기 : 위촉직 2년(연임 가능)
- 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

라.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안 제23조)

마.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 안 제30조)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환경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yangsh418@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3) 팩스 : 054-650-61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환경관리과(전화 : 054-650-65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 및 군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 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제7조(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① 군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군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군수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예천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 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축 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군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 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예천군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감축 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3. 군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 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예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과 경상북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9조(예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예천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군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 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예천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경상북도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경상북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연직 위원 : 군 소속 탄소중립 정책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탄소중립 정책 관련 기업·기관 및 사회단체·환경단체의 장,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예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

제17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군수는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군수는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로·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하여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9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군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

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22조(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40조에 따라 적응 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의 기후위기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군의 분야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4.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범군민적 녹색생활 운동과 적응대책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24조(협동조합의 활성화) ①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절차는 군수가 정한다.

제25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실천연대가 영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군수는 군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7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

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는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군수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탄소중립 지원센터 대상기관) 영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시설과 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0조(행사의 시행) 군수는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예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예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

제4조(적용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감축 목표를 최초로 수립할 때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하고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한다.